

14. 몰타 (Malta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6년(노령·유족), 1956년(사회부조), 1965년(장애), 1979년(소득비례연금)
- 현행법 : 1987년(사회보장)

2. 제도형태

- 기초제도, 사회보험제도, 사회부조제도

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제도
 - 당연적용 : 산학연계 프로그램 참가 학생 포함 근로자 및 자영자
 - 임의가입 :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미혼자
 - 적용제외 : 전일제 학생
- 기초제도, 사회부조제도
 - 당연적용 : 몰타 거주시민 본인과 배우자, 유럽사회헌장의 적용을 받는 몰타 거주자, 유럽연합 및 특정 국가 거주시민
 - 적용제외 :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기혼자

4. 자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제도
 - 주간 기준소득의 10%를 납부; 최대 소득이 법정 주간 최저임금인 18세 미만자는 주간 €6.62
 - 최저 주간 보험료 : €17.25
 - 최대 주간 보험료 : €34.94(1962 이전 출생자), €45.58(1962 이후 출생자)
 - 법정 주간 최저 임금 : €172.51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연 소득은 €18,167(1962 이전 출생자), €23,701(1962 이후 출생자).
 - 가입자의 보험료는 또한 질병, 산재, 실업급여의 재원이 됨.
 - 기초제도,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제도
 - 자영 활동의 순소득에 따라 주당 €29.41~€68.37 상이함
 - 농부, 임대·투자·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보험료율이 상이함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연간 순소득은 €18,167(1962 이전 출생자), €23,701(1962 이후 출생자)임
 - 자영자의 보험료 또한 현금 질병, 산재 급여의 재원이 됨
- 기초제도,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제도
 - 임금지급총액의 10%를 납부; 최저임금소득의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주간 보험료 €6.62
 - 근로자당 최저 주간 보험료 : €17.25.
 - 법정 주간 최저 임금 : €172.51.
 - 최대 주간 보험료 : €34.94(1962 이전 출생자), €45.58(1962 이후 출생자)
 - 사용자의 보험료 또한 현금 질병, 산재, 실업 급여의 재원이 됨
- 기초제도,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○ 정 부

- 사회보험제도
 - 보험료 총액가치의 50%를 사용자로서 납부
 - 정부 보험료 또한 현금 질병, 산재, 실업 급여의 재원이 됨
- 기초제도,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소득연계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연금 수급 연령
 - 1951. 12. 31 이전 출생자는 61세(남성) 또는 60세(여성)
 - 1952~1955년 사이 출생자는 62세(남성,여성)
 - 1956~1958년 사이 출생자는 63세(남성,여성)
 - 1959~1961년 사이 출생자는 64세(남성,여성)
 - 1962. 1. 1 이후 출생자 65세(남성,여성)
 - 1979년 1월 16일 이후 처음 가입한 자에게만 지급
 - 가입자는 연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인정기간 50주 이상을 포함하여 보험료 총 납부기간이 156주 이상이어야 함

- 1961년 이전 출생자 : 35년간 평균 50주 납부
- 1962~1968년 출생자 : 40년간 평균 50주 납부
- 1969년 이후 출생자 : 41년간 평균 50주 납부
- 은퇴 직전 10년간 급여를 받으며 근로했어야 함
- 소득비례연금 또는 정액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의 최고금액을 지급
- 부분연금 : 소득비례연금 연령조건을 만족하고 156주 이상 납부하였으나 연 평균 납부기간이 15주 이상 50주 미만인 경우 부분연금 지급
- 자녀양육 크레딧
 - 자녀가 있는 가입자(입양 포함)의 생년 및 자녀수에 따라 크레딧 가산됨
 - 1952~1961년 출생자: 6살까지 양육한 자녀 한 명당 (최대 3명) 2년의 가입기간 인정, 넷째 자녀부터는 가입자가 최소 1년은 복직한다는 조건 하에 납부기간을 1년씩 인정, 장애아를 10세까지 양육할 경우 가입기간 4년 인정
 - 1961년생 이후 출생자 : 6살까지 양육한 자녀 한 명당 (최대 3명) 4년의 가입기간 인정, 넷째 자녀부터는 가입자가 최소 2년은 복직한다는 조건 하에 가입기간을 2년씩 인정, 장애아를 10세까지 양육할 경우 가입기간 4년 인정
 - 법적 양육권이 있어야 하며 가입 인정된 기간은 양쪽 부모 간에 공유 가능
- 학업 크레딧
 - 퇴근 후 학업 정진하느라 납부기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, 그 기간을 납부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1952~1961년 출생자 : 학업수준에 따라 1~6개월 인정
 - 1962년생 이후 출생자 : 학업수준에 따라 1~12개월 인정
- 질병, 실업, 사별, 장애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- 조기연금 : 생년월일 불문하고 61세부터 지급
 - 1952~1961년 출생자 : 18세 이후 1,820주(35년) 이상 납부 또는 가입 인정기간이 있어야 함
 - 1962~1968년 출생자 : 18세 이후 2,080주(40년) 이상 납부 또는 가입 인정기간이 있어야 함
 - 1969년 이후 출생자 : 18세 이후 2,132주(41년)의 납부 또는 가입인정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함
- 소득활동은 중지되어야 함
- 연기연금 : 65세까지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

- 해외지급 가능
- 정액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연금 수급 연령
 -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1세(남성) 또는 60세(여성)
 - 1952~1955년 사이 출생자 : 62세(남성과 여성)
 - 1956~1958년 사이 출생자 : 63세(남성과 여성)
 - 1959~1961년 사이 출생자 : 64세(남성과 여성)
 - 1962. 1. 1 이후 출생자 65세(남성과 여성)
 - 1979년 1월 16일 이후 가입했으며 사용자지원연금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받으며 연금소득이 낮아야 함
 - 소득비례연금 또는 정액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의 최고금액을 지급
 - 자녀양육 크레딧
 - 자녀가 있는 가입자(입양 포함)의 생년 및 자녀수에 따라 크레딧 가산됨
 - 1952~1961년 출생자: 6살까지 양육한 자녀 한 명당 (최대 3명) 2년의 가입기간 인정, 넷째 자녀부터는 가입자가 최소 1년은 복직한다는 조건 하에 납부기간을 1년씩 인정, 장애아를 10세까지 양육할 경우 가입기간 4년 인정
 - 1961년생 이후 출생자 : 6살까지 양육한 자녀 한 명당 (최대 3명) 4년의 가입기간 인정, 넷째 자녀부터는 가입자가 최소 2년은 복직한다는 조건 하에 가입기간을 2년씩 인정, 장애아를 10세까지 양육할 경우 가입기간 4년 인정
 - 법적 양육권이 있어야 하며 가입 인정된 기간은 양쪽 부모 간에 공유 가능
 - 질병, 실업, 사별, 장애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조기연금 : 생년월일 불문하고 61세부터 지급
 - 1952~1961년 출생자 : 18세 이후 1,820주(35년) 이상 납부 또는 가입 인정기간이 있어야 함
 - 1962~1968년 출생자 : 18세 이후 2,080주(40년) 이상 납부 또는 가입 인정기간이 있어야 함
 - 1969년 이후 출생자 : 18세 이후 2,132주(41년)의 납부 또는 가입인정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함
 - 소득활동은 중지되어야 함
 - 연기연금 : 65세까지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
 - 해외지급 가능

- 비수급자 기여형 퇴직보조금(사회보험) : 50주 이상 납부했으나 소득연계 또는 정액노령연금의 최소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62~74세 가입자
- 보충수당(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세대주의 총 연수입이 €9,103(독신)/€13,091(기혼) 이하인 가구에 지급
- 비기여형 노령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가입자의 종합 소득 및 자산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지급
 - 자산조사 : 자산이 €14,000(독신)/€23,300(기혼)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 - 해외지급 불가
- 노령시민 보조금(기초제도) : 몰타 혹은 고조에서 혼자 거주하거나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75세 도달자

○ 장애연금

- 소득연계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16세 이상 정년 미만이며,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가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(근로능력 90% 상실)를 판정받았고, 연평균 보험료 납부 또는 가입인정 기간 50주 이상을 포함하여 총 납부기간이 250주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가입자는 청구 이전에 최소 12개월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했어야 함
 - 질병, 실업, 사별, 장애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부분장애 : 16세 이상 정년 미만이며 근로능력을 20%~89% 상실했다고 판정되었고, 연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가입인정기간 50주 이상 포함하여 총 납부기간이 250주 이상이어야 함
 - 부분연금 : 연 평균 가입기간이 20주 이상인 경우 감액지급
 - 해외지급 가능
- 비기여형 장애수당(사회부조) : 16세 이상 정년 미만이어야 함. 소득연계 또는 정액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의 최고금액을 지급
 - 완전장애(자산조사) : 다음과 같은 영구적인 완전장애로 판정되어야 함
 - 마비, 심각한 기능장애, 완전질병, 사지가 절단되거나 또는 신체 중 일부 절단
 - 중증장애 (자산조사) : 중증 정신질환, 장애, 혹은 뇌성마비
 - 추가 중증장애(자산조사 없음) : 중증 정신질환, 장애, 혹은 뇌성마비 환자이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자
- 비기여형 맹인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14세 이상의 시각장애인에게 지급
- 비기여형 간호수당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장애가 있는 부모, 시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, 배우자의 형제자매, 삼촌, 혹은 고모를 같이 거주하며 상시 간호하는 정년 미만의 1인 또는 미망인

(홀아비)에게 지급

- 비기여형 간호수당과 비기여형 추가 간호수당의 수급권이 있는 경우 간호수당의 최고금액을 지급
- 자산조사 : 자산이 €14,000 초과하지 않아야 함

• 비기여형 추가 간호수당(보편제도)

- 장애가 있는 부모, 시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, 배우자의 형제자매, 삼촌, 혹은 고모를 같이 거주하며 상시 간호하는 정년 미만의 1인 또는 미망인(홀아비)에게 지급
- 비기여형 간호수당과 비기여형 추가 간호수당의 수급권이 있는 경우 간호수당의 최고금액을 지급
- 해외지급 불가

○ 유족연금

• 소득연계배우자연금(사회보험)

- 사망한 배우자가 퇴직연령이었거나 또는 사망한 배우자가 19세 이후 연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가입인정기간 50주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156주 이상을 납부했어야 함
- 사망한 배우자가 산재 혹은 직업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가입기간이 최소 1주 이상이어야 함
- 정액배우자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연금의 최고금액을 지급
- 부분연금 : 사망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사망 당시 연평균 15주를 포함하여 156주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져야 함
- 재혼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정액 배우자연금으로 대체됨; 정액 배우자연금은 사망자의 연 평균 보험료율에 비례함
- 배우자 보조금 :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유족(배우자); 수급자가 소득 활동할 경우는 16세 미만
- 해외지급 가능

• 정액 배우자연금(사회보험)

- 사망한 배우자가 퇴직연령이었거나 또는 사망한 배우자가 19세 이후 연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가입인정기간 50주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156주 이상을 납부했어야 함
- 사망한 배우자가 산재 혹은 직업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가입기간이 최소 1주 이상이어야 함
- 정액배우자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연금의 최고금액을 지급
- 부분연금 : 사망자의 연 평균 납부기간 혹은 납부 인정기간이 20주 이상
- 배우자 보조금 :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유족(배우자); 수급자가 소득 활동할 경우는 16세 미만
- 해외지급 가능

- 고아연금(사회보험)
 - 16세 이하(소득이 있는 직업이 없을 경우 22세 이하)의 완전고아에게 지급
 - 부모 중 최소 한명은 사망 당시 가입기간 1주 이상이어야 함
 - 해외지급 가능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소득비례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퇴직 전 최종 10년 중(1952~1955년생은 퇴직 전 최종 11년, 1956~1958년생은 12년, 1959~1961년생은 13년) 연속적인 최고 소득 기간 3년간의 연간 평균 소득의 66.7%를 근로자에게 지급; 혹은 퇴직 이전 41년(1969년 이후 출생자; 1962~1968년생의 경우 40년) 중 기본급여가 가장 높은 열 해의 평균의 최대 66.7%
 - 퇴직 전 최종 10년(1952~1955년생은 퇴직 전 최종 11년, 1956~1958년생은 12년, 1959~1961년생은 13년, 1962년 이후 출생자는 10년) 간의 가입자 연 평균 신고 순소득의 66.7%를 자영자에게 지급
 - 부분연금 : 가입자의 연 평균 납부 보험료(주 단위)에 따라 완전연금의 일부를 지급
 - 조기연금 : 소득비례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계산; 연금액 감소 없음
 - 연기연금 : 소득비례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계산; 연금액 증가 없음
 - 소득비례 노령연금 주간 최대금액 : €234.65
- 정액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의 결혼 여부 및 연평균 주간 보험료에 따라 €101.04~ 150.40 지급
 - 조기연금 : 정액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산정; 연금액 감소 없음
 - 연기연금 : 정액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산정; 연금액 증가 없음
- 비수급자 기여형 퇴직보조금(사회보험) : 75세까지 매년 €150(가입기간 50~259주) 혹은 €250(가입기간 260주 이상) 지급
- 보충수당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부모와 거주하며 근로중으로 독신인 자 : 최대 €2.43/주
 - 혼자 거주하며 근로중으로 독신인 자 : 최대 €7.00/주
 - 수급자 또는 실업자로 독신인 자 : 최대 €4.57/주
 - 기혼자, 연 가구총소득 €11,272 이하인 경우 : 최대 €12.54/주
 - 기혼자, 연 가구총소득 €11,272 ~ €13,091 인 경우 : 최대 €2.6854/주
- 비기여형 노령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독신 : €110.46/주
 - 부부 : €143.23/주

- 부부 중 한쪽만 대상인 경우 : €96.85/주
- 연금액 조정 : 정부에 의해 매년 결정되는 생활수당 증가에 따라 조정됨
- 노령시민 보조금(보편제도)
 - 매년 일시금 €300 지급
 - 첫 해 지급액은 75번째 생일부터 연말까지 배분됨

○ 장애연금

- 소득연계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정액 주간연금은 사용자지원연금 또는 연금저축계좌 지급 여부와 가입자의 결혼 여부, 그리고 피부양 배우자 여부에 따라 정해짐
 - 주간 장애연금액 하한은 미혼 €100.61 또는 기혼 €106.54
 - 주간 장애연금액 상한은 미혼 €106.54 또는 기혼 €144
 - 부분장애 : 장애 정도에 따라 주당 €16.00~€71.19 지급
 - 부분연금 : 연 평균 납부액(주 단위)에 따라 완전 또는 부분연금의 일부를 지급
- 비기여형 장애수당(사회부조)
 - 완전장애(자산조사) : 주 €77.77
 - 중증장애(자산조사) : 주 €103.30
 - 추가 중증장애(자산조사 없음) : 주 €140
- 비기여형 맹인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주 €103.30
- 비기여형 간호수당 : 주 €91.17
- 비기여형 추가 간호수당 : 주 €141.75
- 연금액 조정 : 정부에 의해 매년 결정되는 생활수당 증가에 따라 조정됨

○ 유족연금

- 소득비례 배우자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 사망/퇴직 이전 최종 11년 중 최고 소득의 연속 3년간 연 평균 소득의 최대 55.6% 지급; 가입자가 자영자인 경우 배우자의 사망 또는 퇴직 직전 11년중 최고 소득의 연속 10년간 연평균소득의 55.6% 지급
 - 2016년 부로 사망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의 최대 66.7%를 받을 수 있음
 - 부분연금 : 사망자의 연 평균 납부액 (주 단위)에 따라 완전연금의 일부를 지급
 - 배우자 수당 : 소득활동 시 자녀 당 주 €4.54, 소득활동하지 않는 경우 주 €9.32 지급
- 정액 배우자연금(사회보험) : 주 €134.64 지급
 - 부분연금 : 20~29주 보험료의 연평균 주 €101.04 지급; 30~39주는

€113.64; 40~49주는 €126.24

- 배우자 수당 : 소득활동 시 자녀 당 주 €4.54, 소득활동하지 않는 경우 주 €9.32 지급

- 고아연금(사회보험)

- 16세 미만 : 주 € 60.94
- 16~21세이며 소득활동하지 않는 경우 : 주 € 103.28
- 16~21세이며 소득활동은 하나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수당 및 총 소득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과 상응하도록 수당이 감액됨
- 법정 최저주간임금 : €1 72.51
- 연금액 조정 :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됨

7. 관리운영기관

- 가족사회연대부(Ministry for the Family, Children's Rights, and Social Solidarity)
 - <https://www.family.gov.mt>
 - 전반적 감독
- 사회보장이사(Director of Social Security)
 - <https://www.socialsecurity.gov.mt>
 - 제도 관리
- 국세청(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)
 - <https://www.scfr.gov.mt>
 - 징수

<2018년 ISSA 자료>